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85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8599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36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피항소인 1.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은

2. I

변론 종결 2022. 8. 10.

판결 선고 2022. 9. 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364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H은 안성시 J 전 9,223㎡ 중 3630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2015.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I은 안성시 J 전 9,223㎡ 중 363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1996.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욱

판사안좌진

판사이혜미

1) 원고들은 2021. 9. 16.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다.